


의정활동보고서



제227회 임시회(2008. 8. 27 ~ 9. 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국지성 호우와 찜통더위, 그리고 열대야로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오늘부터 13일간 일정으로 제22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타시도 SOC사업 비교견학, 그리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복절 기념행사 독도 개최, 을지훈련 등 도정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온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는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땀흘려 이룩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파행하던 국회도 여야합의에 의한 원구성을 계기로 민생법안 처리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풀리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시설과 연구기관, 인력이 잘 구비되어 있는 우리 도가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를 이끌어 내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선점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활동과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도 해볼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후반기 첫 도정질문과 조직개편안 등의 안전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있지 않으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물가안정과 불우시설 위문, 체불임금 일소 등으로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2일 제11대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
부가 함께 성원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며,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함께 모아 도민의
복리가 더 한층 증대되고 경북의 미래를 활짝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4
1. 소	집	14
2. 회	기	14
3. 활	동	15
가.	본회의	15
나.	위원회	16
III. 의안	처리	24
IV. 민원	처리	26
1. 청	원	26
2. 진	정	26
가.	접 수	26
나.	처 리	27
V. 본회의	보고사항	28
1. 의안	접수사항	28

2. 의회행사 사항	28
3. 위원회 활동사항	29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29

VI. 5분 자유발언	32
-------------------	----

VII. 도정질문	37
-----------------	----



부 록



□ 조례안(5건) 99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27회 임시회는 2008년 8월 27일 11:00 개회하여 9월 8일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25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7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공식인 부의장 선거를 하여 김응규(김천)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54명, 출석의원 53명에 김응규 의원 16표, 박영화 의원 20표, 송필각 의원 16표, 무효 1표였으며, 1차 투표결과 과반획득이 없어 2차 투표에서 김응규 의원 23표, 박영화 의원 21표, 송필각 의원 9표였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어, 3차 결선투표에서 김응규 의원 29표, 박영화 의원 24표를 얻어 김응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도정질문은 8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채옥주(비례) 의원과 남종식(청송) 의원, 안순덕(의성) 의원이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비료·유류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보전대책,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8월 2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장길화(비례) 의원, 손덕임(비례) 의원, 윤영식(예천) 의원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문제, 독도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책,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상북도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민생관련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각 실·국·본부별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하였다.

제4차 본회의를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등 8건을 승인·의결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개최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경산 출신

이우경 위원을, 부위원장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15명)

- ▶ 위원장 : 이우경(경산), 부위원장 : 김영기(청송)
- ▶ 위 원 : 이시하(문경), 이상용(영양), 나규택(고령), 이상호(경주), 박순범(칠곡), 채옥주(비례), 박기진(성주), 이종원(상주), 이준호(청도), 안순덕(의성), 장세현(포항), 김영택(구미), 장병익(군위) 의원이 선임되었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8-10호
(2008년 8월 18일)

라. 집회일시 : 2008년 8월 27일(수)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8년 8월 27일 ~ 9월 8일(1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누계 58회)

※ 제223회 누락분(4회) 추가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 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26회 까지	401	27	63	60	61	53	47	60	30
누락분 추가	30		5	5	6	5	5	4	
227회	25	1	4	4	4	4	4	4	
누 계	456	28	72	69	71	62	56	68	30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제 211·222·223회 누락분 추가)

3. 활 동

가. 본회의(전체 의사일정)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월 27일(수) 11:00 개의 (제1차 본회의)	○ 제1차 본회의(개회) 1. 개 회 식 2. 안건심사 ①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②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③ 휴회의 건 ④ 부의장 선거	1일간
8월 28일(목) 11:00 개의 (제2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일간
8월 29일(금) 11:00 개의 (제3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일간
8월 30일(토) ~ 9월 7일(일)	○ 상임위원회 활동	9일간
9월 8일(월) 11:00 개의 (제4차 본회의)	○ 안건처리(폐회)	1일간

나. 위원회

휴회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전과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가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아시아 최초 연료전자설비 제조공장인 포스코 연료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발전소시설 등을 둘러보고 이어서 영덕 풍력 발전소를 찾아 풍력에너지 보급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3일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를 방문하여 경북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새마을운동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전파되어 국위선양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 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 현황을 파악했다.

교육환경위원회는 9월 3일 포항에 있는 경북도과학교육원, 포항교육청과 경북도수목원을 잇따라 방문하여 각 기관의 운영 상황과 현황을 직접 살펴본 뒤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어서 4일에는 경주지역의 경주핵폐기물처리장과 산림환경 연구원을 찾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대응책을 적극 마련할 것으로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9월 4일에서 5일까지 울릉도를 방문하여

대하항 및 천부항의 수산시설공사 현황을 파악한 뒤 나리분지 농작물 재배실태를 확인하였다.

통상문화위원회는 9월 4일에서 5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운영실태와 호미곶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엑스포에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통해 구축된 행사장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행사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경주 방문 관광객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있는 인프라 활용 방안과 법인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왜관 - 대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주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지구, 고령소방서 신축공사현장, 청도 - 경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소방서 등 주요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8. 8. 28(목) 14:50(제1차)	○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 제2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일 시	구 분	부 의 안 건	비 고
8. 27(수)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개회, 안전심사)	본회의장
8. 28(목)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도정질문) ①채옥주(교육), ②남종식(농수), ③안순덕(통상)	본회의장
8. 29(금)	본회의 (11:00)	☐ 제3차 본회의(도정질문) ①장길화(건설), ②손덕임(기획), ③윤영식(농수)	본회의장
8. 30(토) ~ 8. 31(일)		○ 휴 회	
9. 1(월)	제1차 상임위 (11:00)	☐ 도정 업무보고 ○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기획조정본부 ☐ 안전심사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견	기획경제위 회 의 실
9. 2(화)	제2차 상임위 (11:00)	☐ 도정 업무보고 ○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무원교육원, 경북개발공사	기획경제위 회 의 실
9. 3(수)		○ 휴 회	
9. 4(목) ~ 9. 5(금)		☐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현장확인 ○ 포스코발전용연료전지공장 준공식 ○ 영덕 풍력발전소, 영해 재래시장 ○ 울진 원자력발전소	도 내
9. 6(토) ~ 9. 7(일)		○ 휴 회	
9. 8(월)	본회의 (11:00)	☐ 제4차 본회의 ○ 안전처리(폐회)	본회의장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일 시	차 수	내 용	장 소
8. 27(수) 11:00	본회의 제 1 차	☐ 개 회 ○ 부의장 선거의 건 등	본회의장
8. 28(목) 11:00	본회의 제2 차	☐ 도정질문의원 ○ 채옥주(교육환경), 남종식(농수산) 안순덕(통상문화)	"
8. 29(금) 11:00	본회의 제 3 차	☐ 도정질문의원 ○ 장길화(건설소방), 손덕임(기획경제), 윤영식(농수산)	"
9. 1(월) 11:00	상임위 제1차	☐ 업무보고 ○ 감사관실 소관 ○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보건복지위 회 의 실
9. 2(화) 11:00	상임위 제2차	☐ 업무보고 ○ 경도대학 소관 ○ 자연환경연수원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
9. 3(수) ~ 9. 4(목)	상임위 활 동	☐ 현지확인 ○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구미) ○ 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김천) ○ 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안동) ○ 문경시립노인병원(문경)	
9. 5(금) ~ 9. 7(월)		○ 휴 회	
9. 8(화) 11:00	본회의 제 4 차	☐ 안건처리, 폐회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환경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 27(수) 11:00	☐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8. 28(목) 11:00	☐ 제2차 본회의	"
8. 29(금) 11:00	☐ 제3차 본회의	"
8. 30(토) ~ 8. 31(일)	○ 휴 회	
9. 1(월) 11:00	☐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 주요 업무보고(환경해양산업국 소관) ○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 주요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교육환경위 회 의 실
9. 2(화) 11:00	☐ 제2차 교육환경위원회 ○ 주요 업무보고(교육청 소관)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9. 3(수) ~ 9. 4(목)	☐ 현지확인 ○ 경상북도과학교육원, 포항시교육청, 경상북도수목원 ○ 경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 산림환경연구소	포 항 시 경 주 시
9. 5(금) ~ 9. 7(일)	○ 휴 회	
9. 8(월) 11:00	☐ 제4차 본회의	본회의장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일 시	구 분	안 건	비 고
8. 27(수) 11:00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안건처리 ☐ 부의장 선거의 건	본회의장
8. 27(수) 14:30	상임위 활 동	☐ 간담회 ○ FTA대책특별위원회 상반기 활동 상황 보고	위원장실
8. 28(목) 11:00	제2차 본회의	☐ 도정질문 ○ 채옥주(교육환경), 남종식(농수산) 안순덕(통상문화)	본회의장
8. 29(금) 11:00	제3차 본회의	☐ 도정질문 ○ 장길화(건설소방), 손덕임(기획경제) 윤영식(농수산)	"
8. 30(토) ~ 9. 1(월)		○ 휴 회	
9. 2(화) 11:00	제 1 차 농수산 위원회	☐ 업무 보고 ○ 농수산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	농수산위 회 의 실
9. 3(수)		○ 휴 회	
9. 4(목) ~ 9. 5(금)	상임위 활 동	☐ 현지 확인 ○ 수산시설사업 및 특산물 생산·유통기반 시설 확인	울릉군
9. 6(토) ~ 9. 7(일)		○ 휴 회	
9. 8(월) 11:00	제4차 본회의	☐ 안건 처리 ☐ 폐 회	본회의장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통상문화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일 시	구 분	내 용	비 고
8. 27(수)	본회의 11:00	☐ 제1차 본회의(개회)	본회의장
8. 28(목)	본회의 11:00	☐ 제2차 본회의(도정 질문)	본회의장
8. 29(금)	본회의 11:00	☐ 제3차 본회의(도정 질문)	본회의장
8. 30(토) ~ 8. 31(일)		○ 휴 회	
9. 1(월)	상임위 11:00	☐ 제1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 ○ 주요업무보고(투자통상본부, 관광산업진흥본부)	통상문화위 회 의 실
9. 2(화)	상임위 11:00	☐ 제2차 통상문화위원회 회의 ○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국)	”
9. 3(수)		○ 휴 회	
9. 4(목) ~ 9. 5(금)		☐ 현지확인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경주) ○ 호미곶 관광지 개발현장(포항) ○ 경북통상, 경산육상경기장(경산) ○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청도)	
9. 6(토) ~ 9. 7(일)		○ 휴 회	
9. 8(월)	본회의 11:00	☐ 제3차 본회의(안전처리, 폐회)	본회의장

제2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8. 8. 27 ~ 9. 8(13일간) 】

일 시	내 용	비 고
8. 27(수) 11:00 ~	☐ 제1차 본회의 ○ 개 회 ○ 부의장 선거의 건 등	본회의장
8. 28(목) 11:00 ~	☐ 제2차 본회의 ○ 도정질문 ①채옥주(교육) ②남종식(농수산) ③안순덕(통상)	”
8. 29(금) 11:00 ~	☐ 제3차 본회의 ○ 도정질문 ①장길화(건설) ②손덕임(기획) ③윤영식(농수산)	”
8. 30(토) ~ 8. 31(일)	○ 휴 회	
9. 1(월) 11:00 ~	☐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업무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 소방본부 소관	건설소방위 회 의 실
9. 2(화) ~ 9. 4(목)	☐ 현지확인 ○ 「왜관 ~ 대구」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상주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현장 ○ 고령 소방서 신축공사 현장 ○ 「청도 ~경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경산 소방서	왜관 상주 고령 청도 경산
9. 5(금) ~ 9. 7(일)	○ 휴 회	
9. 8(월) 11:00 ~	☐ 제4차 본회의 ○ 안전처리(폐회)	

Ⅲ. 의안처리

(2008. 9. 8 현재-227회 최종)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71 (238)	71 (234)	62 (188)	8 (41)	- (4)	1 (1)		- (4)	
조 례 안	소 계	37 (138)	37 (135)	31 (104)	5 (27)	- (3)	1 (1)		- (3)	
	의 제 회 안	11 (35)	11 (33)	10 (27)	1 (6)				- (2)	
	도지사 제 출	20 (77)	20 (76)	16 (58)	3 (15)	- (2)	1 (1)		- (1)	
	교육감 제 출	6 (26)	6 (26)	5 (19)	1 (6)	- (1)				
규 칙 안		- (3)	- (3)	- (2)	- (1)					
예산·결산		4 (20)	4 (20)	2 (8)	2 (12)					
동의·승인		6 (26)	6 (25)	6 (25)	- -				- (1)	
건 의 안		- (4)	- (4)	- (4)	- -					
결 의 안		7 (15)	7 (15)	6 (13)	1 (1)	- (1)				
기 타 안		17 (32)	17 (32)	17 (32)	- -					

□□ 상임위 유보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 '07. 3. 14 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07. 6. 12 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07. 11. 5 상정유보)
- 경상북도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통상문화위원회 - '07. 12. 4 심사유보)

Ⅳ. 민원처리(2008. 9. 8 현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7 (54)	2 (4)	(6)	(5)	6 (23)	(1)	(2)	(4)	1 (4)	(5)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 (9)			(4)	1 (2)		(1)			(2)
행 정 보건복지	2 (7)	2 (3)	(4)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1 (4)								1 (4)	
통 상 문 화	(5)		(2)	(1)			(1)	(1)		
건 설 소 방	5 (20)				5 (19)					(1)
특 별 위원회	(2)				(2)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7 (54)	7 (54)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 (9)	1 (9)				
행 정 보건복지	(7)	(7)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1 (4)	1 (4)				
통상문화	(5)	(5)				
건설소방	5 (20)	5 (20)				
특별위원회	(2)	(2)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8. 8. 19)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8. 8. 20)
경상북도지사 (2008. 8. 19)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08. 8. 19)	경상북도 수렵강습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2008. 8. 20)
경상북도교육감 (2008. 8. 18)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청이전후보지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장 (2008. 8. 27)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기간연장 (중간보고)안	본회의 부의 (2008. 8. 27)

2. 의회행사 사항

- 타시·도 SOC사업 비교 견학
 - 일 시 : 2008. 8. 13(수) ~ 8. 14(목), 2일간
 - 장 소 : 여수, 목포 등 서·남해안권 주요도로 및 교량
 - 주 관 : 의정연구회
 - 참 석 : 도의원,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 원 회	2008. 8. 5 (화), 10:30	위원회회의실	• 보고회 개최 - 경상북도 조직개편(안) 사전 보고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2008. 8. 6 (수), 11:00	특별위원회 회의실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 집행부 도청이전 추진현황 보고 - 증인선서 및 도청이전 증인 신문
	2008. 8. 11(월) ~ 8. 12(화)	영천, 안동, 상주	• 현장확인 및 현지 의견수렴 - 도청이전 관련 의혹사항 의견수렴 - 식사 및 탈춤공연 관련 사항
	2008. 8. 18 (월), 15:30	특별위원회 회의실	• 간담회 개최 - 서류 미제출에 따른 향후 특위 운영에 관한 사항
	2008. 8. 19 (화), 11:00	"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 도청이전 관련 증인 신문 - 집행부측 서류 미제출로 특위 활동 중단
	2008. 8. 26 (화), 15:00	"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 - 특별위원회 활동 재개 및 활동 기간 연장 심의 등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지역균형발전 대토론회 리셉션

- 일 시 : 2008. 8. 1(금), 19: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 일 시 : 2008. 8. 11(월), 10:00
- 장 소 : 전북 무주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도의원

○ 애국지사 초청 간담회

- 일 시 : 2008. 8. 12(화), 11:30
- 장 소 : 경북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 일 시 : 2008. 8. 13(수), 11:0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도의원

○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60주년 경축 행사

- 일 시 : 2008. 8. 15(금), 10:00
- 장 소 : 독도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정무웅
독도수호특위위원장, 도의원

○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

- 일 시 : 2008. 8. 18(월),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8을지연습훈련 충무시설 위문

- 일 시 : 2008. 8. 19(화), 14:00
- 장 소 : 충무시설 내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황상조
특위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정기회

- 일 시 : 2008. 8. 22(금), 15:00
- 장 소 : 대전 컨벤션센터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대 친환경농업교육 및 연구센터 준공식

- 일 시 : 2008. 8. 22(금), 11:30
- 장 소 :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실험실습장
- 참 석 :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정책간담회

- 일 시 : 2008. 8. 26(화),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8년 8월 28일(목) 제22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병훈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민선 4기 김관용 도지사의 출범 이래 동·서·남해권 발전 특별법,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유치 등 경북의 신성장 동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달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 우리 경북도가 신청한 주요사업의 국비지원 규모가 대폭 삭감되고 상당수 사업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예산이 크게 깎이는 등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대구·경북 홀대론이 예산 배정에서 현실화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북의 최대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자원화 및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를 비롯하여 포항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준비하여 온 것임에도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에 대한 호남권과의 경쟁이 불가

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6개 광역경제권에 특화분야별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호남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경북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화분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경합하여 오직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89.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폐장 건설사업은 10만드럼 규모의 1단계 방폐장을 2009년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재 공사진척률 40% 이상을 보이는 등 거침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지원되는 사업비중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7.4%에 지나지 않는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유치 당초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선전했던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국가 R&D사업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총 건설사업비 2,890억원 가운데 국비 1,28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1,604억원을 고스란히 경주

시에 부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심지어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배후단지를 다른 시·군이 유치하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어 경주시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은 또 어떻습니까? 2005년 3월에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두말할 나위 없는 법률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폐장 확정 3년이 지나도록 본사 이전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수원의 고유업무는 크게 원전의 발전업무와 원전 관리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8년 3월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한수원 본사 고유업무 중에서 원전관리 업무만을 떼어내어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을 발족시켜 방폐물 처분시설과 전혀 관련 없는 수도권, 혹은 대전에 입지한다는 이야기가 경주시민의 역장을 무너지게 하고 분통이 터질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등의 업무는 모두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에 주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본사는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경주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정부의 약속만 믿고 경주 경제를 살린다는 기대감에 표를 몰아 유치한 방폐장은 그 후속사업들이 하나

같이 지연되고 그것도 모자라 방폐장관리공단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핵폐기물 처분장은 무려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국가적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우리 경북과 경주가 해결하면서 경주는 스스로 한수원 본사 등의 이전을 약속하였음에도 이처럼 후속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방폐장관리공단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고서 경북도가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동해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등의 목소리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북도는 방폐장을 경주로 유치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내어야 하는 3대 국책사업의 원활한 집행은 물론, 유치지역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 내용의 확정과 예산 지원 등이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수원 본사에서 분사되어 나가는 것인 만큼 당연히 방폐장 지원 특별법에 의해 경주에 유치기로 약속한 한수원 본사 고유업무이기에 처음 정부의 약속대로 경주 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폐장 유치를 기점으로 한수원 본사, 그리고 4개의

원전을 갖고 있으며, 전국 고준위폐기물의 54%가 저장되어 있는 경주는 그야말로 원자력에너지의 중심지로서 그와 관련한 세계적인 연구 및 사업 등은 물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기에 동해안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경주 지역의 문제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사활이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VII. 도정질문

□ 2008년 8월 28일(목) 제22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채옥주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조병인 교육감님 외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 집중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봉화군 춘양면과 의성군 일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렵고 치솟는 물가상승으로 살기조차 어려운데 하루속히 응급복구가 되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심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추진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제7대 도의회 이후 연간 입법 활동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는 바 2002년 조례안 40건 등 90건이고, 2003년 조례안 43건 등 총 92건, 2004년 조례안 53건 등 총 100건,

2005년 조례안 53건 등 총 102건, 2006년도 조례안 63건 등 총 92건, 2007년 조례안 65건 등 총 10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을 분기점으로 의정활동의 성격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이전에는 거의 미미했던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본회의에 부의된 기준으로 2006년 14건, 2007년도에는 18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2007년도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 중 개정 조례와 경상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의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 순수 집행부를 상대로 한 제정조례만 발취하여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시행된다면 그렇게 제정된 조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이미 정책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경상북도 보육조례,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특정 조례는 시행규칙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 제·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 조희 시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하든지 의회가 무리하게 강행하여 조례를 통과시켰다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하여 비록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집행부도 의회의 눈치만 살피는 구태에서 벗어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솔직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 되기 위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안 해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해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이전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울릉도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문제점,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 숲 조성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적조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울릉도의 2007년 말 현재 인구는 대략 1만 5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하루 관광객은 계절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수

기는 1일 관광객 최대 입도 약 3,500여 명이고, 심지어 1일 관광객 최대 체류 수는 약 8,000여 명일 때도 있습니다.

2007년도 관광객 수는 22만 2,560명으로 1일 평균 610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1만여 명의 인구를 가지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7년 말에 PBS공법으로 완공된 나리마을 하수처리장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40톤 규모로 약 2,300~2,400명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외의 울릉군 내 음식점, 유흥업소, 개인주택 등은 개별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는 하나 상당량의 오·폐수들은 그대로 동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울릉군의 인구와 1일 평균 입도 관광객수 및 체류 관광객 수를 감안할 때 현재 단 1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울릉도 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보면 신고대상으로 소 사육시설은 19곳이 신고되어 있으며, 허가시설 대상은 현재까지 단 한 곳도 허가된 곳이 없을 정도로 축산폐수 처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울릉도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직 기본계획조차 없는데다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한 도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

니다.

최근 독도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점에서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등한시하여 청정 동해바다를 오염시킨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울릉도 개발과 함께 주변 해양환경문제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경북도는 해양오염 등 백화현상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총 304억원을 투자하여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도내 40개소를 선정하여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올해까지 23개소 4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바다 속에 투하해놨는데 그 콘크리트 인공어초에서 백화현상의 근원인 수산화칼슘이 녹아나오고 이 수산화칼슘은 탄산칼슘으로 변화하든지 또는 수산화칼슘과 중탄산칼슘이 탄산칼슘이 되든지 하여 백화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40억년인데도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산호초섬이 없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동해바다에서 발생하는 백화현상은 1차적으로는 연안지역에서 버린 각종 해양오염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바다 숲 조성사업의 콘크리트 인공어초가 오히려 백화현

상을 촉진시키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다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십자형 콘크리트 등의 인공어초에 대한 중간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조현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울진군 근남면에 동해 먼 바다에서 적조가 분산된 상태에서 북상하다가 기습적으로 연안을 덮쳐 입식을 앞두고 있는 강도다리 1만 7,000여 마리가 폐사되어 어민들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적조 발생 시 황토를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살포는 단편적이고 원시적인 전시 행정적 방제 대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다량의 황토와 적조생물이 함께 해저로 퇴적되어 해저에는 또다시 혐기성 분해를 통해 해저생물까지 사멸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황토 살포 방식에 대해 투자 대 효과를 중간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황토 살포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울진의 금강소나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으로 대량 반출되면서 최고 소나무급에 해당되는 10~50년 이상 된 금강소나무 숲이 무차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 초부터 6월말 현재까지 도내 각종 인·허가 지역에서 굴취된 소나무 1만 2,500그루 중 23%에 해당하는 2,850그루가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지에서 굴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씨앗이 나무로 자라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하고 2년생 소나무를 심어 목재로 쓰려면 60~8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한 대부분의 수해지역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건립도 추진해야겠지만 산림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귀한 금강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 및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목 굴취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산지 전용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북 산림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 가치는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8.2%에 해당하는 약 66조원에 상당하며, 국민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제공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전체면적에서 임야가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면적 대비 임야면적 6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은 21% 수준으로 강원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의 산림휴양시설은 울창한 산림자원에 비해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200개소 중 경북은 국유 5개소, 사유 1개소, 공유 11개소로 합계 17개소로 8.5%에 불과하고 산림욕장은 전국 96개소 중 16%이며, 수목원은 38개원 중 경북은 1개원이고 산림박물관 8개관 중 1개관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자연휴양림이 전국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 대비 21%로 전국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산림휴양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진은 금강송, 영천은 보현산 웰빙숲, 청송은 태행산 소나무숲, 봉화는 산림특화사업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연안지역은 레포츠단지 개발 등 산림자원 입지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림을 개발하고, 레저휴양·레포츠·질병치료 및 보건휴양, 산림문화 및 환경교육 등의 다목적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명실공히 경북을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신산림 서비스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비만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증언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비만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등도 비만과 고도비만 학생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경도비만은 초·중·고 모두 2005년 6.2%, 2006년 6.7%, 2007년 7.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도비만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중등도 비만이나 고도비만 학생에 비해 외형적으로 과체중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종합 분석하면 지역 간 전체 학생수 대비 비만 학생의 비율차이는 매우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이 많은 곳은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 후에도 비만은 계속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매년 증가하는 경도비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실적 연구 및 대책수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일부학교에서 집단으로 노출된 결핵 등 학교보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포항 북구에 소재한 5개 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 감염 검사와 흉부엑스레이 검진 실시 결과 10여 명의 학생들이 결핵 양성반응을 보여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결핵 감염 학생 현황을 확인한 바로는 2005년도 7개교 8명, 2006년도 25개교 37명, 2007년도 40개교 59명이 결핵에 감염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은 질병 그 자체보다 다른 질병을 인체에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증세가 호전되었다가도 성인들과 달리 면역력이 약해 재발할 수 있는데다 오락실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으로 인해 추가 전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건강하고 힘차며, 주민은 편안하고 넉넉하며, 산수가 청명한 아름다운 경복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남종식 의원(농수산위원회) ◎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송출신 농수산위원회소속 남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27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부자 되는 경북실현을 위하여 발로 뛰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어려운 교육여건 하에서도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이상천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의회의 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천 의장님의 능력과 역량이 발휘되어 광역지방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16개 시·도 의원들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들은 실망과 좌절, 희망과 환희를 맛본 희비가 교차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AI(조류인플루엔자), 쉽게 말해서 닭감기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시름에 빠졌으며, 정부와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부재로 인한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로 이어진 성난 민심,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보았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동료의원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故 이용석 부의장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의 오랜 바람이요 숙원이었던 신도청소재지를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3백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였고, 경상북도와 제8대 경상북도의회가 큰 업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기되었던 의문과 의혹들은 도청이전후보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말끔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가 확정 공표되어 도민의 바람과 숙원이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금번 2008베이징올림픽을 통하여 희망과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2008베이징올림픽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하며, 우리 경상북도 모든 공직자들도 역량을 발휘하여 도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바람과 뜻을 모아 금번 도정 질문을 통하여 뜻을 표출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며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주세법에 의하면 모든 술의 제조허가권

및 술 연구소를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는데 식품으로 분류되는 술을 현실에 맞게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이행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왕권시대에 권력의 상징으로 대표되었던 술, 그 시대에는 권력기관이 주류제조허가권을 가짐으로써 권력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또 축적하는데 이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주인인 이 시대에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술을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국세청이 제조허가권을 가지고 술 연구소마저 관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식품인 주류 즉, 술의 제조허가권 및 술 연구소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시켜 농촌지역 전통주의 맥을 살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이익들이 농업 발전을 위하여 보태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며 또한 그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사용처의 투명화와 범칙금 수익금을 농업특별회계로 편성하여 농촌·농민을 위한 시설 즉,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과 휴게소를 건립하여 우리 농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고 그 이행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통범칙금 규모는 약 1,000만 건에 4,000~5,000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행정기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징수금액만도 약 50만 건에 60억원 정도에 이릅니다.

본의원은 차를 운행하면서 가끔은 의문을 가집니다. 저 많은

교통범칙금 수익이 과연 어디에 쓰여 지는지, 투명하게 쓰여 지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건립,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 CCTV 설치, 도시특별회계 등 적재적소에 잘 분배 되어 유익하게 쓰여 지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나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서 이 수익금이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쓰여 질 수는 없을까 하고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금으로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 먹거리들을 도시민들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 및 휴게소를 세워 도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와 농산물 직거래 구입처를, 농민들에게는 직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김관용 도지사께서 지향하는 부자 되는 농업경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농수산 분야 예산을 도전체 예산규모 비율에 따라 증액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FTA에 대비해서 경북농업의 활로를 모색하여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가장 짧게 드리는 것은(종이를 들어보이며) 이미 우리 도지사께서 농업인을 만날 때마다 희망 넘치고 찾아오는 농업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북농업을 위해서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지향하시는 부자 되는 경북농업과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산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지향하시는 부자되는 경북농업을 꼭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작년 1년 사이에 비료값 및 유류값 인상에 따른 농수산업 생산비 증액분을 도비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비료값은 작년 3월 1일 요소 한 포대에 9,150원 하던 것이 현실적으로 2만 700원으로, 복합은 9,350원 하던 것이 2만 2,000원으로 너무나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료값이 폭등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시름과 좌절에 빠져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정부, 농협중앙회, 시군자치단체, 비료회사들과 발맞추어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추·담배 생산농가와 어민들도 유류가 급등과 면세유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면세유 공급을 늘리고 건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협중앙회가 1조원을 투자해서 농기계은행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실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 사업의 취지와 방법은 어떤 것인지, 상호보완하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복지시설에 관한 설립조건을 강화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경상북도 도청 이전을 당연시해서 경상북도 도청 부지를 임대하여 노인요양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시설보완을 위하여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한다면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유가인상에 따른 올 겨울 경로당 난방비 보전대

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노인 어르신네들의 사랑방과도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니 밤새워 기거하면서 경로당이 있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다고 안도하는 노인 어르신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늘 기름값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올 겨울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불을 지피지 못하는 경로당이 없도록, 노인 어르신네들이 기름값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경로당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운영조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임명권이 시는 도지사가, 군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군 의용소방대원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군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권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군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합리함을 당하거나 출동수당 및 각종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는지 꼭 살펴봐 주시고, 군단위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와 희생, 봉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19구급대의 노후차량 교체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5일 지역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본의원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청송군 현서면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와 함께 영천까지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그날 2명의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속한 출동과 함께 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신뢰받는 119구급대로 인식시켜 주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119구급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어 힘과 기능이 떨어져 매우 불안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불안한데 환자는 오죽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의원이 1시간 정도 탔는데 온 몸에 땀이 다 났고 정말 불안해서 이런 차량에 환자들을 태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 노후된 119구급차량에 동승하여 보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도 꼭 한번 동승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능 좋은 119 구급차로 교체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또한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득 옛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권유로 글사장 사장한테 한문을 4년쯤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우리 글사장께서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저는 답변하기를 좋아합니다.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아버지 맛있는 것 사드리고, 돈 많이 벌어서 비단 옷 입혀 드리고,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호화로운 집을 지어서 잘 모시겠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그 글선생 사장께서 “야 이놈아, 효도는 너와 같이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는 봉양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봉양이란 것은 지금 이 시간 좋은 것으로 잘 먹여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좋은 집에서 잠을 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은 경상북도 도민들을 봉양해야 합니다. 말로만 나중에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부자경복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북도민을 잘 먹이고, 지금 경북도민을 잘 입히고, 지금 경북도민을 잘 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 초점을 한데 맞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가운데도 열린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안고 경북도민들에게 다가갈 때에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림픽 구호였던 ‘우·생·순’ 합시다. 우리 생애에 최고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경상북도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순덕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의원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의성출신 안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본의원에게 제22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북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25일 날 봉화군 일대에
갑작스런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월 15일 또 의성군에 이틀 동안 쏟아진 국지성
폭우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재산적 피해와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복구,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 지사님께서 현지에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다가올 새로운 60년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나 교육, 도로, 지역경제, 생활환경 이것이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부분항목인데, 대부분의 인프라가 북부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단순 비교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북부권 내에서도 순수 내륙지역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남부권의 구미는 44.8%, 포항이 53.3%, 영양이 8.3%, 봉화가 8.5%, 의성이 9.8%, 남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도 경북 전체 평균은 2,077만원이지만 북부권은 1,390만원으로 상당한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2006년말 기준입니다. 현재 2007년도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경북의 북부지역은 지역불균형 현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고, 갈수록 상대적인 소외감은 경북 북부지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낙후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여 주셨고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추진, 동해안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효과가 북부 내륙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 이것은 한시입법입니다. 2020년까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일반법과는 달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시혜적인 복지와 예방적인 복지가 필요 하듯이 낙후지역의 SOC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열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도지사님을 비롯한 기획조정본부장, 그리고 실·국장님들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산업과 연계하여 북부지역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실버타운 조성계획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로 낙동강 토속 어종 산업화센터 건립계획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8월 29일(금) 제227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장길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한 30분에 대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체 네 가지 정도의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지사에게 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 세계문화엑스포 활성화 방안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문제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굉장히 부실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전체적인 우리 도의 종합건설본부를 앞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생각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감께서 출마를 할 시에 교육감 공약사항이 지금까지 86건이 됩니다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정질문을 최대한 줄이고 보충질문하는 시간에 할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기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에서는 이 도정질문 자료에 의해서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길화 의원 도정질문 자료)

경북을 사랑하고 경북발전을 염원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인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경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길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경북도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도
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을 구현해 달라는 의미로 도정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상
북도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199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 수입예산은 2천228억 4천6백만원이고 이중 지출은 1천 941억 6천만원으로 차액이 286억 8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 유동자산이 328억 8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대차대조표를 확인해 본 바 1997년부터 그간 투자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밀한 예산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축제의 내부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력확보 방안,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그리고 이번에 건립한 경주상징 조형물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코자 하오니 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과외 정원으로 도본청 공무원과 경주시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지금까지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법인소속 직원은 시설물 관리 등 하위 직원들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행사운영 시 구성된 인력을 보면 도 공무원 48명, 경주시 공무원 10명, 조직위 법인직원 18명 등 총 76명으로, 법인직원 중 전문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장기 비전 즉, 최종목표는 무엇

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도 어떤 분야에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행사를 할 때나 하고 난 후에 이권 관계로 항상 말썽이 많은데 무엇 때문이고 해소대책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투명성과 인력의 독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산은 각 실원국에서 매년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또 일부는 재단에다 지원하여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이런 이중적 구조입니다.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원국별 엑스포 예산은 예산편성 심의 때 도의회에서 확실하게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파견 공무원 48명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1천4백59억 6천3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업성이 없어 경영수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07년도 문화엑스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국고 및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전입금 299억 3천8백만원을 제외할 시 입장권, 광고, 시설임대 등 수익성 사업은 84억 6천9백만원이고, 직원 급여, 행사준비금, 홍보비 등 사업성 지출은 178억 4천3백만원이며 실제 지출액 대비 수익은 93억 7천4백만원으로 적자경영인데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공원내 시설물 건립에

따른 지원 예산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 산업이 눈앞의 수입보다 지역경제에 파생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되는 예산에만 의존한 채 수익 사업에 소홀히 하여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여 개나 되는 지역축제의 난립과 행사에 사용된 세금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돈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쏟아 부을 계획입니까?

다섯째,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경주타워’와 ‘문화센터’가 44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신라의 삼대 보물중의 하나라고 하는 황룡사9층목탑의 이미지를 음각화한 형상이라고는 하지만, 음각 자체의 이미지가 겉모습만 나타내고 있어 일반인들이 경주의 문화유산인 대표적인 불탑의 이미지로 재형상화 했다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이는 것이 취지이고 목적인데 현대식 콘크리트 철 구조물이 어울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경주타워’의 디자인이 제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70세, 한국명 유동룡)’이 설계한 타워디자인을 도
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의 가치가 그 도시의 공간에서 유일하고 독창성
있는 이미지의 건축물이어야 하나, 황룡사9층목탑의 경우 문화
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불교계와 도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의 추진으로 목탑이 복원된다면 ‘경주타워’의
이미지와 겹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그 대표성의 가치를
잃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엑스포 내 ‘경주타워’의 추진배경과 설립과정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경주타워’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느냐”, “또 얼마나 들었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집니다. 440여 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전부 다 입을
딱 벌립니다.

그 뒤 하는 얘기가 그 돈이면 경주엑스포 땅 절반을 사고
그 위에 이런 구조물을 짓고도 남겠다고 합니다. 추진배경과
설립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밝힌 몇 가지 문제점은 문화엑스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문화엑스포 법인 자체를 경북관광 개발공사와 통합하여 21세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야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창조적 경영 혁신을 모토로 1997년에 설립자본금 470억원을 포함한 납입 자본금 639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수권자본금 1,600억원 규모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공영개발 사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정규직원 63명, 예산규모만 2,200여 억원 등 10여년 만에 괄목할 만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보면 위·수탁사업을 비롯하여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원묘지조성 및 납골당설치 사업」, 「관광단지·리조트·휴게소사업」, 「아파트 임대 관리사업」, 「체육시설 설치관리 운영사업」,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 공급 및 임대사업」 등 9개 항목으로 마치 대그룹의 문어발식 사업경영을 보는 듯합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주로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위에서 보듯이 1997년 사업초기에는 현재 사업범위가 시대에 맞았을지 모르지만 11년이 지난 지금은 사업목적을 재정비 할 때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기구는 사장, 이사, 1실, 1단, 8팀으로 운영인력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만 2,200억원 규모의 공기업으로써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인적구성요소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문직 요원으로 구성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직진단과 공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업의 의결기구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9명으로 상임이사는 사장과 상임이사로, 비상임이사는 당연히 도 기획조정본부장과 건설도시방재국장이며, 사외이사는 교수 2명, 회계사 1명, 전직공무원 1명이고, 비상임감사는 도 감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사회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공사가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6개소에 5천6백47억원이고, 산업단지 4개 사업에 1천9백29억원,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1개소의 골프장 630억원과 위·수탁 3개 사업에 2백77억원 등 총 8천4백83억원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의 5.3배에 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라면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하겠습니까?

적은 인적구성과 비전문 인력으로 참으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에 맴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사업, 공단개발사업, 골프장사업은 한때 잘나가는 사업으로 개발공사가 뒤늦게 뛰어들어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공사의 공익업무보다 젓밥이나 마음이 탄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 전문업체도 한 달에 한두 곳씩 부도 나거나 문 닫고 있는 현실에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무척 의문스럽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3개 휴게소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새재 휴게소’를 50억원에 짓고 연 4천7백만원의 임대료를, ‘경주서라벌광장휴게소’를 78억원에 지어 연 1억 1천1백만원의 임대료를, 그리고 ‘한티휴게소’를 11억원을 들여 연 2억 1천1백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개 휴게소 사업에 총 1백39억원을 들여 연 3억 6천9백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연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데 3억 6천 9백만원의 수익이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런 사업을 잘 운영도 못하면서 공기업이 왜 해야 합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루 빨리 매각 처분을 해야 하는데 보통
부동산 투자는 5~10년 이상 지나면 투자금액의 3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공사에서 투자한
3개소는 총 투자금액이 1백39억원인데 현재 시가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억원을 투자한 문경새재 휴게소를 매각처분 하려고
하니 4차례 유찰에 32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비경제적인 투자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헐값에 매각하거나 처분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또 공사사옥 건물에 14개 기관과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연
면적 4,618㎡에 임대보증금이 총 16억 9천5백만원입니다.
적정한지 정밀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2005년 영덕풍력 발전소에 5억원을 출자했는데 왜 참여
했는지, 그간 배당은 얼마나 받았는지, 출자하기 전 사업성 검토를
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도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운영
하던 팀을 2000년 7월 1일에 8명을 인수해서 2006년에 5억
3백만원, 작년에 5억 4천6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팀을 왜 공사가 인수했는지 궁금하고,

또 많은 종목 중에 역도팀을 인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미 옥계 신나리 1차, 2차, 경산 백천신나리 아파트에 1,330세대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분양사업이 잘 되던 때인데 왜 임대사업을 시작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분양 했을 때와 임대사업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투자대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0세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업을 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하자 접수가 총 45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 했다는 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비쳐 지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1천75억원인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8천억원 이상 사업을 벌려 났기 때문에 부채가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도 본청과 비교를 해보면 연 예산이 4조원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부채는 2천8백억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 수권자본금이 1천6백억원 정도인 개발공사가 앞으로 온전하게 살림살이가 꾸려지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기업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때는 골프장 사업이 제조업의 3~5배 정도의 이익을 낸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630억원의 투자비에 비해서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처분하십시오. 또 아파트 사업을 시행중인 것은 잘 마무리하고 계획 중인 것은 아파트나 공단 할 것 없이 전문가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창조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개발공사의 제1의 경영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한다면 결국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거둬들인 예산낭비 등이 나타난다면 결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감만 증가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강화하고 우수한 시공능력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시켜 도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공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방만한 경영 방지대책과 인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인적구성 요소 및 이사회와 재구성,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도 종합건설본부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해 사업예산 6천1백56억원의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의 571억원 중 564억원의 금액을 시·군에 위임 집행하고, 균형개발과의 932억원중 직접시행은 28억원이고 나머지 904억원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며, 도로철도과 1천915억원중 직접시행은 1천414억원이고, 치수방재과는 1천637억원중 직접 시행은 531억원이며, 시군위임은 1천10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축지적과 사업은 대부분 시·군에 위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건설사업소 운영 연 예산 387억원과 북부지소 예산 397억원도 직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6천1백56억원중 시·군보조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인 3천2백90억원이나 되고 직접시행 사업예산은 2천3백58억원으로 38%에 그치고 있으며, 연말쯤 3개 국도 유지관리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면 그에 따른 인원과 예산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인원은 180명 정도이며 예산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입니다.

자체인력과 업무 관리상 문제 등으로 시·군에 위임한 보조사업도 전면 재점검하여 직접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 약 3조원 계획과 시행도

병행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개발공사’, ‘건설도시방재국 시·군 위임사업’, ‘종합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과 예산을 합하여 가칭 “경상북도 종합건설본부”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군의 업무 부담도 덜어주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서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용역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감의 공약사항 실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선거 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공약 사항을 어디까지 실천하고 계시는지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상북도는 중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연히 교육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이다’, ‘평등 교육이다’ 하여 쟁점사항으로 등장하는데 교육감의 소신은 어느 쪽이며 그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정규교육시간, 우수한 교사 확보, 교육 시설의 환경 등이 우수학생을 배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부진학생을 정상궤도에 올리고, 우수학생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덕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손덕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정의 충실한 감시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일본의 독도 망언 등을 보면서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외교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을 배가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성한 우리 영토인 독도가 그간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고, 일본의 망언이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오면서 독도 문제에 대처해 왔습니다만 일본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 국민감정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및 북핵문제 등 산적한 외교 현안에 몰두한 사이 잠재적 현안과제인 독도문제를 방치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독도라 부르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고,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북도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어떠했는지도 반성하고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결국 실효적 지배권의 확립 및 공고화라는 국내적 측면과 역사적 사실과 인류보편의 상식을 기초로 한 미래 한·일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외교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독도에 관한 국비 요청도 탁월한 아이디어 없이는 ‘실효적 지배권 확립’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정부차원의 전면적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축적된 명분을 가지고 독도의 문화, 안보, 자연, 관광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에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독도수호대책팀’과 같은 기구 설치도 필요하지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포함하는 독도의 영구적 지배와 종합적 개발을 위한 가칭 ‘독도의 영유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이 법률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마련만이 향후 독도에 대한 항구적 수호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제안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독도문제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4월초로 기억되지만, 지사께서 국토해양부 등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했을 때와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북도 순방 시에도 독도관련 사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망언으로 문제가 야기되자 7월 14일부터 25일 까지 12일간 ‘독도현지 방문 규탄대회’, ‘해외 독도수호 자문위원 위촉’ 등 5건의 이벤트를 집중 추진하였고, 7월 29일 한승수 총리께서 독도방문 시 ‘독도수호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올해 초까지 연장 4.4km 구간에 1,500억원을 요청한 울릉 일주도로에 대해 3,000억원으로 증액 요청했으며, 독도관리선의 경우

에도 당초 100톤급에서 160톤급 규모라고 바꿨으며, 경북도가 야심차게 수립한 동해안개발종합계획에도 독도관련 사업이 관리선 건조를 포함해 4~5개 밖에 들어 있지 않는 등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관광섬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중장기 과제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 대만, 일본, 중국 등이 2020년 동북아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인프라를 더 확충해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세계인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열린 독도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독도수호 종합대책’에는 국제해양관광 크루즈 개발 추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한편, 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에 일본 부품소재기업 전용 공단 조성은 대통령께 건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본과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는 독도를 제대로 수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독도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처럼 독도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정부도 역사적 사실과 인류보편의 상식을 기초로 한 올바른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한·일 간의 외교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지방외교도 이에 걸맞은 구체적 실천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한 총리께 ‘독도수호 신구상’ 추진상황을 보고 하면서,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독도전담 국제 자문대사 임용, 사이버 독도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용CD 제작·배포,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도의 지방외교 역량이 이처럼 부실하다는 데 대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과 중앙정부, 지방과 동북아, 지방과 국제기구차원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지방차원의 외교력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독도문제와 관련, 우리 도의 지방외교 방향이나 활동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펼친 지방외교의 성과와 향후 지방외교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개방과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높은 생산비와 산지 소 값의 하락,

정부의 미흡한 지원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한우사육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6월말 현재 498,256마리로 경기도의 두 배가 넘고, 전국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전국의 영세 한우농가가 절대다수인 85% 이상입니다.

지금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한우생산 1위인 경북 한우농가의 어려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인 송아지 값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떨어졌고, 큰 소 1마리당 100만원 이상 하락하는 등 산지 소값이 요동을 쳐도 한우 쇠고기 가격은 산지가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6, 7단계의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거품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쇠고기 유통실태조사’에 의하면, 쇠고기 값의 약 40%가 중간 유통 마진에 해당하고, 소매 단계인 정육점에서 추가되는 비용과 이윤이 전체 가격의 33%에 이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 부정 축산물 유통을 단속하는 미봉책으로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으며, 한우농가의 소득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8월 1일 국회 민생안

정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농어업 민생현안 보고서’는 올해 시설·축산 농가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비용의 유통구조는 한우의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축산농가가 수지자체를 맞출 수 없도록 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본의원은 우리 도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한우 쇠고기의 시장가격이 1만원이라고 하면 약 4,000원이 유통비용과 마진이고 나머지 6,000원 가운데 송아지 가격과 사료 값이 총생산비의 약 75%에 해당하므로 4,500원이 생산비로 충당되고 나면 이윤은 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본이자 13%와 관리비 7%를 제외하면 겨우 300원이 한우농가의 순소득이 되는데 이는 2007년도 기준 600kg 한우가격인 434만원에 대비하면 농가의 순소득은 약 21만 7,000원이 되며, 최근 사료값이 평균 18.6%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한우농가가 처한 어려움의 타개책은 한우 육종보급과 송아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규모 사료단지 조성 등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 개선, 생산이력제 전면 도입, 위생검역 강화 등 가격과 위생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수요측면에서의 전략이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우 경쟁력의 저하요인인 고비용의 유통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실질적인 중·소 농가 밀착지원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하여 생산농가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는 한편 국내는 물론 수출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비 증가와 소득감소라는 엄청난 위기에 처한 대다수 경북의 중소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도는 2017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우량 송아지 안정공급 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규모 확대, 축산물 유통 투명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우산업 육성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액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만든 경북 농어업 10대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우클러스터사업에 493억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에 704억원, 한우쇠고기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672억원 등 3개 분야에 총 1,869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책의 경우 10년 동안 1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농어업 전체를 포함하는 총 4조원의 경북농어업 10대 프로젝트 경우에도 약 2조

1,000억원은 확보가 불투명한데 특정산업의 육성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도 마치 지켜질 것처럼 발표됐는데 지사께서는 한우산업 육성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 농어업 10대 프로젝트를 보면 농민사관학교 설치·운영 등 10개 분야 총사업비 4조 543억원 중 48%인 1조 9,538억원은 국비와 FTA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자체 재원은 총사업비의 10%에 불과한 4,079억원입니다. 소요 재원의 90%를 의존재원으로 조달한다는 이 프로젝트 또한 실효성에 의문이 가며, 정책수립 시 가장 기본적인 목표설정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경북농어업 10대 프로젝트에서는 한우 적정 사육규모와 한우의 1등급 출현율이 50만두와 80%로 한우산업 육성책에서는 2017년 목표를 40만두와 60%로 설정하는 등 정책의 신뢰성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예산의 90%가 의존재원이며 정책 목표도 제 각각인 경북 농어업 10대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윤영식 의원(농수산위원회) ◎

예천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한 인적자원 양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무척 지루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농업관련 현황과 공직자 비리관련 질문의 답변은 우리 유인물에 배분된 답변요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경상북도의 주요 투자유치를 보면 LG디스플레이,

웅진, 서한 ENP제강, 소디프, STX솔라, 코오롱건설, 삼성에버랜드 등 3조 5,36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도지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경북의 경제현실을 보면 이와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8월초에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동향을 보면 경북지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 5.9%보다 1.2%가 높은 7.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취업자 감소현황을 보면, 강원 2,000명, 전남 1만 2,000명, 부산 1만 5,000명, 대구 1만 7,000명, 충남 1만 8,000명, 경북 2만 3,000명으로 경북의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4분기 청년실업률 역시 7.7%로 전년 동분기보다 1.9% 늘어나 일자리 부족도 전국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건설업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건설공사액 181조 6,570억원 중 9조 9,240억원으로 전국평균은 2006년보다 12.6%가 증가하였으나, 경북은 오히려 1.6%가 감소하였고, 올 6월 기준 건설공사금액을 보면 전년동월 대비 6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4,242세대로 작년 대비 23%가 증가하였고, 생산자제품에 대한 제고지수에서도 작년 동월 대비 2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천 의장, 이상효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지사는 MOU체결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실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MOU체결이 실질적인 투자가 뒤따르지 않고 고용과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MOU체결의 내용과 이행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MOU체결에 따른 후속적인 진행현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그리고 경기부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화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MOU체결과 투자유치가 실질적인 경제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기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기업, 종업원 50인 문화예술영위기업 등 30인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견인원도 고용인원으로 허용하는 등 지방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나타난 지방이전 업체현황을 보면, 전체 1,296개 기업 중 충남 351개, 전북 268개, 강원 265개, 충북 178개, 대전 73개, 광주 61개, 부산 27개, 경북 21개

기업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국비지원기업 현황에서도 191개 기업 중 강원도 52개, 충남 50개, 전북 36개, 대구 7개 기업이 국비를 지원받은 반면, 경북에 이전한 기업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경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와, 경북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도와 강원, 전북에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수도권 기업의 경북이전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대안과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해서 2006년에 수립한 4년 중기계획입니다. 현재 2007년에 1차년도 계획을 수행하였고, 올해 2차년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상북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계획의 특징은 생활권 중심, 서비스 기반 및 체계구축,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2007년 1차연도 계획실적과 2008년 2차연도 수행계획을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권역별 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권역과 시·군별로 적절한 복지기반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미 기반이 확충되어 있는 시단위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업은 자활지원센터가 없는 의성, 영양, 청송지역에 농촌형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의 건립지원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확충사업에서도, 당초계획에서는 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영천, 포항, 구미, 김천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당초계획대로 권역별 또는 시·군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광역단체인 경상북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계획 대비 연차별 수행과정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2007년에 1차연도 계획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획은 당초계획을 초과달성하는가 하면 일부계획은 추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기능강화사업은 당초 계획은 2년 동안 15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2007년 98개소, 2008년 13개소를 설치하여 총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사업,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사업 등은 당초계획은 2008년 이후 계획되어 있으나 2007년부터 사업을 수행한 반면에, 차상위계층 자녀 교육비지원사업, 장애인 광역 이동권 구축사업, 보건연계관련사업 등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7년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자녀 교육비지원사업은 교육청 소관 업무인데,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12억원을 책정·계획되어 있고, 장애인 광역 이동권 구축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보건복지여성국과 경제과학진흥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수립 따로 집행 따로’라는 비판과 함께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계획의 사업명과 전혀 다른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연도 시행계획을 보면,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읍·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군에서 임명하는 복지위원제도입니다. 당초계획에서는 시·군복지위원의 연찬회, 교육, 표창,

우수사례 발굴 등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개최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에서도 당초계획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통합교육, 활동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성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에 있으며,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지원사업도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의 구축이 당초계획이지만 시행계획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전자화 시책에 따른 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사업도 예천군을 비롯한 복지관이 없는 7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행계획에서는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15개 복지관의 운영지원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없거나 관련부서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획과 추진내용이 다른 이유와 계획수행을 위한 관련직원의 역량강화 및 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

완료된 상습침수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 240개 지구에 1만 9,600 헥타르 중 96지구 1만 1,400 헥타르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면적기준으로 58.3%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사업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상습 침수 지역의 공사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포항시는 사업대상 면적의 83.2%를 완료했고, 안동시 83.9%, 의성군 90.5%를 완료한 반면에, 칠곡군은 사업대상 면적의 4.7%, 경산시 25.7%, 예천군 35.7%를 완료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단기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너무 늦고, 상대적으로 시·군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사업이 진행되고 시·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관련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전국 231만 3,000여 대 중 50만 2,000여 대인 전국의 22%로 전국 1위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S분무기는 전국의 37% 15,483대, 바인더 34% 17,743대, 농산물건조기 30% 60,120대 등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수리인력 양성현황을 보면 2007년 3,456명, 2008년 3,59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대상의 97%가 1일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기계 수리인력 양성은 2007년 5명, 2008년 5명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인구 현황에서 40대 이상의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운전조작과정은 2007년에 고작 13명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수리인력의 양성과 여성농업인의 농기계운전조작에 대한 교육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최근의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 비리는 경상북도의 감사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듯합니다.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채용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뇌물수수사건,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알선수뢰사건, 울릉군청 공무원의 태풍복구비를 부풀려 가로챈 사건 등 공무원의 업무관련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도청에도 감사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원 감사에서는 비리를 적발하는데,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감사관이 도지사과 관련이 있어서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소속이 같은 공무원이라서 서로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감사관실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관운영의 목적인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의한 지적이나 외부기관에 의하여 사건이 대두될 때까지 도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도 감사관실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압력이나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함께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냉방설비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냉방 설치율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한 서울 98.3%, 경기 94.3%, 인천 98.3%, 충북 71.6%, 충남 85.5%인 반면에, 경북의 냉방개선율이 66.4%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 58.0%,

중학교 67.2%, 고등학교는 79.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북지역보다 여름 무더위가 덜한 서울과 경기도 등의 냉방기기 보급률이 높고, 더위에 약한 어린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냉방 개선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의 냉·난방설비 설치계획을 보면, 2011년이 되어서야 겨우 80.8%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점점 무더위와 폭염이 심화되어 단축수업의 사례가 높아 지고 있음에도 냉방설비 설치계획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러한 냉방 개선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이유와 초등학교 냉방 개선율이 낮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냉방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읽기, 쓰기, 기초수학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지역교육청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주 10%. 군위 5.6%, 봉화 4.1%, 고령 3.9%, 문경 3.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말 구제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영양이 9%, 군위가 16.6%, 경산 28.1%. 안동이 28.3%, 울릉이 28.5%, 상주가 29.8% 등 6개 교육청은 구제학생 비율이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무려 18개

교육청의 구제비율이 30% 미만이며, 특히 영양, 고령, 울릉교육청은 구제비율이 0입니다. 이러한 지역편차와 구제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사들의 노력과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기 초에 학력 부진학생과 학년말의 구제비율이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구제학생 비율이 23개 교육청 중에 무려 18개 지역교육청에서 3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수가 많은 포항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수 277명보다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구미 576명, 경주는 409명, 영주는 358명, 경산 310명, 안동 304명 등 학력부진 학생수가 많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5건

조례안 : 5건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1조”를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243명”을 “4,2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1,919명”을 “1,850명”으로 하며, 제2호중
“2,182명”을 “2,272명”으로 하고, 제3호중 “44명”을 “42명”
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의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정원 19명 (4급 1, 5급 1, 6급 3, 7급 3, 8급 1, 연구사 3, 기능 9급 4, 기능 10급 3)은 민간위탁이 완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제24조·제29조 및 제30조
제 2 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243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919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2,182명</u>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44명</u> 4. (생략)	제 2 조(정원의 총수)<u>4,262명</u>..... 1. : <u>1,850명</u> 2. : <u>2,272명</u> 3. : <u>42명</u> 4. (현행과 같음)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비 율	6% 이내	20% 이내	35% 이내	34% 이내	5% 이상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15% 이내	85% 이상	30% 이내	70% 이상

3. 기능직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 율	6% 이내	17% 이내	19% 이내	29% 이내	29%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 급
비 율	15% 이내	23% 이내	36% 이내	18% 이내	8%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5.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5% 이내	7% 이내	15% 이내	32% 이내	37%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262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338	-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67	48	7	4	8
	5급 이하	1,260	-			
별 정 직	소 계	42	-			
	1급 상당	1	1			
	3급 상당	1	1			
	4급 상당	3	1	2		
	5급 상당 이하	37	-			
연 구 직	소 계	190	-			
	연구관	27			26	1
	연구사	163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8			8	
	지도사	19	-			
소 방 직	소 계	2,272	-			
	소방정	17	2		15	
	소방령 이하	2,255	-			
기능직 계		350	-			
교 원	소 계	42	-			
	학 장	1				
	교 수	30				
	조 교	11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2	일반직 : 3급 1, 4급 1		
관 광 산 업 국	1	일반직 : 3급 1	2010. 10. 31	관광산업 국 장
FTA농축산대책과	1	일반직 : 4급 1	2010. 12. 31	FTA농축산 대책과장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제11조 내지 제12조의3”을 “제9조·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2조중 “본부장·국장·팀장 및 과장”을 “실장·국장·본부장·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3조중 “국(부)·팀·과”를 “국(부)·과·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경제과학진흥국·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한시기구)·문화체육국·농수산국·환경해양산림국·보건복지여성국·건설도시방재국·행정지원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 6 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분석

2. 도·시군 기구 및 정원관리
 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5. 통계의 조사·심사·분석 및 공포
 6.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재정운영·분석 및 공시
 8. 시군의 예산운영 지도
 9.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채 운영
 10. 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
 11.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
 12.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13. 광역경제권 관련 업무 추진
 14.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
 15. 행정규제개혁 추진
 16. 자치법규의 심사·보고·공포
 17. 소송·소청 및 행정심판
 18. 기타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제7조의 제목 “(경제과학진흥본부)”를 “(경제과학진흥국)”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을 “경제과학진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중 제목 “(투자통상본부)”를 “(투자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통상본부장”을 “투자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목 “(관광산업진흥본부)”를 “(관광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을 “관광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제39조를 제44조로 하고, 제11호부터 제16호·제17호부터 제28호 및 제29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8호·제20호부터 제31호 및 제33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며, 제11호·제12호·제19호·제32호 및 제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투자입지개발 기본구상 및 입지지원
- 12.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 1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업무 추진
- 32.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
- 43.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제14조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도민교육 및 평생교육 업무 총괄

제16조제1항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을 “제113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18조중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 ①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 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신물질연구소·성주과채류시험장·청도복숭아시험장·영양고추시험장·상주감시험장·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구미화훼시험장·풍기인삼시험장을 둔다.

②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58-17번지에 둔다.

제25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경도대학”을 “경북도립대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2”를 “제113조 및 영 제17조”로 하고, “경도대학”을 “경북도립대학”으로 한다.

제4장제1절(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절 농업자원관리원

제37조(설치) ①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

유용곤충 자원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1번지에 둔다.

제38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39조(분원) 농업자원관리원에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2. 종자개량·잠업·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 자원발굴 및 산업화 개발

제4장제5절의 제목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산림환경연구소는”을 “산림환경연구원은”으로 한다.

제51조중 제목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52조중 제목 “(지소)”를 “(지원)”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지소를”을 “지원을”로 하고, “지소”를 “지원”이라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장제8절의 제목 “서울사무소”를 “서울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경상북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경상북도서울지사(이하 “서울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서울사무소”를 “서울지사”로 한다.

제62조중 제목 “(소장)”을 “(지사장)”으로 하고, “서울사무소”를
“서울지사”로 하며, “소장”을 각각 “지사장”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지사장”으로 한다.

제4장제9절 제목 “산림소득개발원”을 “산림생태과학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경상북도산림소득개발원(이하 “산림소득개발원”
이라 한다)”를 “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이하 “산림생태과학원”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산림소득개발원”을 “산림
생태과학원”으로 한다.

제65조중 “산림소득개발원”을 “산림생태과학원”으로 한다.

제66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제20조·제23조·제27조 및 제30조중 “제104조제1항”을 각각
“제113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내지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 …………… …………… ……………제9조·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 ……………
제 2 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본부장·국장·팀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실장·국장·본부장·과장 및 팀장…… …………… ……………
제 3 조(팀·과의 설치 등)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조(팀·과의 설치 등)…………… ……………국(부)·과·팀…………… …………… ……………
제 5 조(본부·국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본부·경제과학진흥본부·투자통상본부·관광산업진흥본부(한시기구)·문화체육국·농수산국·환경해양산업국·보건복지여성국·건설도시방재국·행정지원국·소방본부를 둔다.	제 5 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경제과학진흥국·투자통상국·관광산업국(한시기구)·문화체육국·농수산국·환경해양산업국·보건복지여성국·건설도시방재국·행정지원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현행	개정안
제 6 조(기획조정본부) <u>기획조정본부장은</u> <u>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도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분석</u> <u>2. 행정규제개혁 및 광역행정의 추진</u> <u>3. 도·시군 기구 및 정원관리</u> <u>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u> <u>5. 자치법규의 심사·보고·공포</u> <u>6. 소송·소청 및 행정심판</u> <u>7.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u> <u>8. 통계의 조사·심사·분석 및 공표</u> <u>9. 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10. 균형발전 추진<신설 08. 1. 1.></u> <u>11. 예산편성, 재정운영·분석 및 공시</u> <u>12. 시군의 예산운영 지도</u> <u>13.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채 운영</u> <u>14. 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u> <u>15.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u> <u>16. 혁신·분권업무추진 총괄 조정</u> <u>17.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u> <u>18.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업무 추진</u> <u>19. 기타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제 6 조(기획조정실) <u>기획조정실장은</u> <u>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도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분석</u> <u>2. 도·시군 기구 및 정원관리</u> <u>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u> <u>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u> <u>5. 통계의 조사·심사·분석 및 공표</u> <u>6.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u> <u>7. 예산편성, 재정운영·분석 및 공시</u> <u>8. 시군의 예산운영 지도</u> <u>9.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채 운영</u> <u>10. 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u> <u>11.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u> <u>12.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13. 광역경제권 관련 업무 추진</u> <u>14.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u> <u>15. 행정규제개혁 추진</u> <u>16. 자치법규의 심사·보고·공포</u> <u>17. 소송·소청 및 행정심판</u> <u>18. 기타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제 7 조(경제과학진흥본부) 경제과학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u><신 설></u> 8~29. (생략)	제 7 조(경제과학진흥국) 경제과학진흥국장..... 1~6. (현행과 같음) 7. <u>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u> 8~29. (현행과 같음)
제 8 조(투자통상본부) 투자통상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7. <u>투자입지개발 기본구상 및 입지지원</u> 8. <u>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u> 9~12. (생략)	제 8 조(투자통상국) 투자통상국장..... 1~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9~12. (현행과 같음)
제 9 조(관광산업진흥본부) 관광산업진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생략)	제 9 조(관광산업국) 관광산업국장..... 1~8. (현행과 같음)
제 13 조(건설도시방재국) (생략) 1~10. (생략) <u><신 설></u> <u><신 설></u> 11~16. (생략) <u><신 설></u> 17~28. (생략) <u><신 설></u> 29~38. (생략) <u><신 설></u> 39. (생략)	제 13 조(건설도시방재국)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u>투자입지개발 기본구상 및 입지지원</u> 12. <u>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u> 13~18. (현행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19. <u>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업무 추진</u> 20~31. (현행 제17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32. <u>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u> 33~42. (현행 제29호부터 제38호까지와 같음) 43. <u>공공디자인 업무 추진</u> 44. (현행 제39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14조(행정지원국) (생략) 1~22. (생략) <u><신 설></u> 23. (생략)	제14조(행정지원국)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23. <u>도민교육 및 평생교육 업무 총괄</u>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생략)	제16조(설치) ①제113조 및 영 제16조 ②(현행과 같음)
제18조(소관사무) (생략) 1~17. (생략) 18. <u>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 종자의 생산과 보급</u> 19. <u>종자개량·잡업·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u> 20~22. (생략)	제18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17.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20~22.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산물원종장·잠사곤충사업장·경영정보연구소·생물자원연구소·신물질연구소·특화작목시험장) ①농업기술원에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보급을 위하여 농산물원종장 및 잠사곤충사업장을 둔다.	제19조(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 ① <u>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신물질연구소·성주과채류시험장·청도복숭아시험장·영양고추시험장·상주감시험장·봉화고냉지역초시험장·구미화훼시험장·풍기인삼시험장을 둔다.</u>

현행	개정안
②농어촌정보화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경영정보연구소를 둔다. ③생물자원 및 유전자공학 연구를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를 둔다. ④기능성·천연물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신물질연구소를 둔다. ⑤특화작목의 품종개량·재배방법 개선·생리생태·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과채류시험장·청도 복숭아시험장·영양고추시험장·상주 감시험장·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구미 화훼시험장·풍기인삼시험장을 둔다. ⑥농산물원종장·잠사곤충사업장·경영정보연구소·생물자원연구소·신물질연구소·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생략)	제20조(설치) ①…제113조…………… …………… …………… …………… …………… ②(현행과 같음)
제23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9-1번지에 둔다	제23조(설치) ①…제113조…………… …………… …………… …………… …………… ②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58-17번지에 둔다.

[illegible]

현행	개정안
②(생략) 제30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생략) 제 6 절 경 도 대 학 제34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u>경도대학</u>(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생략) 제 4 장 사 업 소 제 1 절 자연환경연수원 제37조(설치) ①「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에게 자연환경보전 및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산37번지에 둔다. 제38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30조(설치) ①……제113조…………… …………… …………… ②(현행과 같음) 제 6 절 경북도립대학 제34조(설치) ①…제113조 및 영 제17조…………… …………… ……………<u>경북도립대학</u>…………… …………… ②(현행과 같음) 제 4 장 사 업 소 제 1 절 농업자원관리원 제37조(설치) ①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과 잠종의 생산·개발,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1번지에 둔다. 제38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지휘·감독한다.

현행	개정안
제3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학습 및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도민 연수 3. 애항·애국심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도민연수에 관한 사항	제39조(분원) 농업자원관리원에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곡·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 종자의 생산과 보급 2. 종자개량·잠업·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 자원발굴 및 산업화 개발
제 5 절 산림환경연구소	제 5 절 산림환경연구원
제50조(설치) ①임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토경관보전과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산림문화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산림환경연구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1030-1번지에 둔다.	제50조(설치) 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이라 한다) ②산림환경연구원은.....
제51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원장..... 원장.....
제52조(지소)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지원) 산림환경연구원.....지원을..... 지원.....
제5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3조(소관사무) 원장.....

현행	개정안
제 8 절 서울사무소 제61조(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정보·자료수집, 투자유치·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u>경상북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u>를 설치한다. ②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62조(소장) <u>서울사무소</u>에 <u>소장</u>을 두며, <u>소장</u>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u>소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7. (생략) 제 9 절 산림소득개발원 제64조(설치) ① 도내 산림자원의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과 야생동물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u>경상북도산림소득개발원(이하 “산림소득개발원”이라 한다)</u>을 설치한다. ② <u>산림소득개발원</u>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69번지에 둔다. 제65조(원장) <u>산림소득개발원</u>에 <u>원장</u>을 두며, <u>원장</u>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소관사무) (생략) 1. <u>산림박물관 조성 및 관리</u> 2~15. (생략)	제 8 절 서울지사 제61조(설치) ①..... <u>경상북도서울지사(이하 “서울지사”라 한다)</u>..... ② <u>서울지사</u>..... 제62조(지사장) <u>서울지사</u>...<u>지사장</u>..... <u>지사장</u>..... 제63조(소관사무) <u>지사장</u>..... 17. (현행과 같음) 제 9 절 산림생태과학원 제64조(설치) ①..... <u>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이하 “산림생태과학원”이라 한다)</u>..... ② <u>산림생태과학원</u>..... 제65조(원장) <u>산림생태과학원</u>..... 제66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u>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u> 2~15. (현행과 같음)

[별표 1]

특화작목연구소 및 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생 물 자 원 연 구 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30-1	
신 물 질 연 구 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133-6	
성 주 과 채 류 시 험 장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635	
청 도 복 송 아 시 험 장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787	
영 양 고 추 시 험 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579-3	
상 주 감 시 험 장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69	
봉 화고냉지약초시험장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43	
구 미 화 훼 시 험 장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62-4	
풍 기 인 삼 시 험 장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657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학교 설립예정지 선정시 주변 지역의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위원 정수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조에 정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계 기관 공무원을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
3.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은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경우 새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이 경우의 위원회 위원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이하 “해제심의”라 한다)를 의뢰하는 경우

2. 교육장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 환경 및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3.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 보호를위하여 의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사례 등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 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5조(위원의 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임기는 중전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경상북도 수렵강습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8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④여성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기본계획등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시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실태
3.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
7.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시 도우미 지원
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3.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5.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귀농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
3.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어촌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

②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27~229회 임시회, 제230회 정례회)



2009. 1. 인쇄 / 2009. 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